

미국의 정보통신 표준화 법체계 연구

손 흥* · 박기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The U.S. Legal System i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Hong Sohn* · Ki-Shik Park*

* ETRI Protocol Engineering Center

E-mail : {hsohn, kipark}@pec.etri.re.kr

요 약

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쟁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 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United States has had the superiority in the global trading market, and focused on the deregulation, decentralization, and often competitiveness. Also, it has adhered to pluralistic and uncoordinated systems for its various standard related activities. But with the WTO TBT entering into force late in 1990s,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global telecommunication market. So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progressive standard activity would lead to keep the superiority of the nation in global telecommunication market. Specially, as the EU has been most active in building an agreed-upon technical standards among its members, the US has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that it has lack of agreed-upon infrastructure for standards.

Hence, to keep the leadership i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market, now it has been focusing on the national approach to standardization activities through the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above purposes, it amended 2 Acts. One is the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The other is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6, which was enacted according to the 1995 report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 by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US legal system i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field including above acts and their implementing plans. And we suggest the need for the active system of government in our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I. 머리말

정보사회의 영향은 일상 생활에 뿐만 아니라, 정치적 슬로건과 같이 비교적 생소한 분야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정보의 사유가 아닌 정보의

공유, 즉 정보사회는 '정보통신'의 혁신적 발전에 기인하며,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그 영향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표준은 기반적 도구

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표준이 가지는 규범적 역할로서의 기능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또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준화 활동을 강조하고, 각자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최선의 활동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1984년 미국을 필두로 국가 또는 지역 표준화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국내의 표준화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산업표준화와 대별하여 정보통신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자발적이고 다양한 미국의 사회체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의 경우에서 보듯이 핵심 기술분야의 선도를 위해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EU는 ETSI를 중심으로 EU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회원국에게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국도 그 동안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표준화 활동에 정부차원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관심의 첫 단계로서 정보통신 관련 법규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1996년의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및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6)의 개정과 NTTAA의 개정에 따른 NIST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들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II. 미국의 표준화 활동과 법제도

1. 미국의 표준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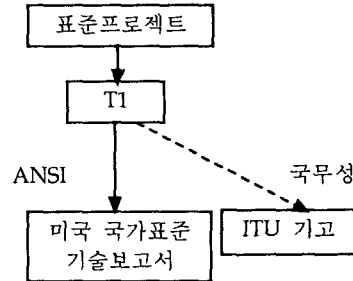
미국 전기통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를 누려 오던 AT&T가 분할됨에 따라, AT&T의 독점적 시장점유로 인하여 상호접속성 및 운용성에 있어서 미국의 표준이 되어오던 AT&T 표준은 민간경쟁 시대에서는 더이상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통신망 관리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통신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통신사업자 및 이용자간의 상호접속성 및 운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체적이고 합의된 표준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정부나 산업계에 널리 인식되었다.

ECSA(Exchange Carriers Standards Association)는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의뢰를 받아, 1983년 ANSI(America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공인을 받아 미국의 전기통신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민간표준위원회를 만들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 2월 T1 위원회가 설립되어 1984년

10월에는 ANSI의 승인을, 1985년 3월에는 FCC의 승인을 받아 명실상부한 미국의 민간표준화기구로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1]

<그림> 미국의 표준화 절차



즉, 미국의 정보통신표준화를 대표하는 기관은 ITU에 대응하는 국무성과 ISO/IEC에 대응하는 민간의 ANSI를 들 수 있다. 그러나 ITU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표준제정 활동은 ANSI와 FCC가 승인한 T1위원회(Standards Committee T1 - Telecommunication)에서 주도하고 있다.

2. 표준화 관련 법제의 정비

1990년대 말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세계 완전경쟁시장에서 그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즉 TBT 협정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국제표준과 적합성평가제도가 국제무역의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못하도록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있어서 가능한 한 국제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각 정부 표준화기관은 본 협정의 공정관행 규약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2]

한편, 유럽은 EU 공동체를 만들고, 그 회원국들이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서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또한 EU 표준을 WTO를 통하여 타국에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WTO 출범 이후부터는 첨단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s)의 장악에만 전념하던 선진 제의 국들이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의 장악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미국도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 이제까지의 완전한 민간중심 표준화활동 체계에 대하여 유럽과 같은 정부차원의 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느끼고 1993년 이후 무역과 표준·적합성 평가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결과가 1995년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이 발간한 '21세기를 향한 표준, 적합성 및 무역'(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st Century)이다.[3]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보

다 효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표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권고 내용중 특히 표준의 개발과 관련한 권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Recommendation 3. 의회는 규제적·조달적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 합의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의 연방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 주요 미정부기관으로 NIST를 지정하는 실정법적 명령으로 OMB Circular A-119를 대신할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 Recommendation 4. NIST 국장은 NIST-ANSI간의 MoU를 위한 공식적인 협상을 발의하여야 한다. 이 MoU는 ANSI와 NIST간의 협력방법과 권한분할을 규정하여야 한다. ANSI는 미국의 임의표준 체계의 구성자이자 승인자로서 비조약 국제표준 제정기구에 대한 미국의 대표이며, NIST는 연방정부의 임의표준 이용에 대한 조정자이자 민간의 적합성 평가서비스를 연방정부가 이용하는데 대한 인정 당국자이다.

이 보고서에 따라, 1996년 3월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NIST법이 개정되었다.

한편,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자유경쟁무역에 대한 장벽의 제거 차원에서 1996년 미국의 전기통신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 두 법률은 미국의 전기통신 표준에 있어서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III. 미국의 전기통신 표준화 관련 법규정

1. NTTAA - NIST법

1996년 3월 개정된 NTTAA는 연방의 표준사용과 임의표준 체계에 있어서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즉 법 제12조(a)(b)는 NIST법을 개정하여 NIST가 정부의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임의표준의 사용을 조정 내지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연방정부의 임의표준 사용에 대하여 제12조(d)에 규정하고 있다.

- NTTAA 제12조(standard conformity)
 - (a) 표준의 사용 NIST법 제2조(b) 개정
 - (b) 조합성 평가활동 NIST법 제2조(b) 개정
 - (c) 의회에 계획제출 NIST는 NTTAA가 개정된 지 90일 이내에 본 조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d) 연방정부에 의한 임의표준의 사용
 - (1) 원칙 본항의 (3)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연방 행정부처(federal agencies and department)는 임의 표준화단체(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bodies)에서 개발되거나 채택된 기술적 표준(technical standard)을 사용하고, 그러한 기술적 표준을 행정부처에서 결정한 정책목표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 (2) 협의·참여 본항의 (1)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방 행정부처는 임의, 민간부문, 합의 표준화단체와 협의하고, 그러한 참여가 공익을 위하여 행정부처의 임무, 권한, 중요도와 재원과 병립할 때에는 기술적 표준의 개발에 그러한 단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 (3) 예외 본항의 (1)의 준수가 그 적용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행정기관 또는 부는 OMB에게 그러한 표준을 사용하여야 하는 설명서를 제출한다면 임의의 합의 표준화단체에서 개발되거나 채택되지 않은 기술적 표준을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997년 회계연도부터 매년 OMB는 본항에 따라 이전 연도에 접수된 모든 설명서를 요약한 보고서를 의회와 의회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생략

○ NIST법 제2조(b) NIST의 기능

- (1) - (2) 생략
- (3) 과학적 조사, 엔지니어링, 제조, 상업, 산업, 교육협회에서 사용하는 표준과 연방정부가 채택하고 인정하는 표준을 비교하고, 연방정부의 민간부문의 표준 사용을 조정하고, 가능한 한 민간 합의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의 사용을 강조한다.
-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연구 및 개발 협정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다.
- (5) - (9) 생략
- (10) 표준 관행, 코드, 사양 및 임의 표준(voluntary consensus standards)을 수립함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기타 부처, 산업 부문, 주 및 지역정부, 제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민간기구와 협조한다.
- (11) - (12) 생략
- (13) 적합성 평가 요구 및 수단의 개발과 공포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과 복잡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연방, 주, 지역과 민간 부문 표준적합성 평가활동을 조정한다.

즉, NTTAA는 정부에 제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임의표준(voluntary consensus standard)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NIS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민간표준화단체와 연방정부의 표준화 활동을 조정할 중심역할을 부여하였다.

- 임의표준의 준수를 향상시키고, 사내표준(in-house standard)에의 의존이 감소되도록 연방부처와 조정
- 연방부처가 제조, 상업, 산업 및 교육기구에 사용되는 표준과 연방정부에서 개발된 표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부문 표준의 연방부처의 사용 증대 조정
- 민간 합의기구에 의해 개발된 표준의 사용 증대
- 적합성 평가와 활동에 대한 가이드 창출

따라서 NTTAA에 의해, ① 민간부문의 임의표준화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의 연방사용이 이제 예외가 아니라 원칙으로 되었고, ② NIST가 표준의 개발에 있어서의 연방의 참여와 표준의 사용을 조정하는 공식적인 명령권을 가지게 되었다.[4]

한편, NTTAA 제12조(c)는 NIST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표준화활동에 대한 실행계획(Implementing Plan - NTTAA)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동 계획안에서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 표준에 대한 공공정책과 무역을 위한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NIST가 ANSI 등 주요 표준화기구와 밀접하게 작업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NIST는 ANSI와 1998년 10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2. NIST - ANSI MoU

본 양해각서는 미국의 국가임의표준 시스템을 강화하여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경제 성장, 건강,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지원하고, 최상의 국가 및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단일화된 국가 접근을 위하여 ANSI를 미국의 대표로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NIST와 ANSI는 최상의 국가/국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단일화된 국가접근의 필요성과 임의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민간부문 및 연방정부 양자의 범위내 및 양자간 더 나은 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리고 MoU는 ANSI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대표자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장 및 강화하고, 임의표준의 제안에 대하여 미국내 민간 및 공공부문간의 교류와 조정을 증진시키며, 국가 및 국제 임의표준 제정절차에 있어서 미국 행정기관 참여의 효과성을 증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3. Telecommunication Act

1996년 전기통신법의 최대 목적은 '경쟁체제의 강화'와 '규제의 완화'라 할 수 있는데, 경쟁의 촉

< 표 > MoU 상 ANSI와 NIST의 권한

ANSI의 권한	
○ ISO/IEC 기타 비조약기구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미국 입장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작업	○ 임의표준에 관련 국제적 적절하게
○ ANSI, SDOs와 일정한 연방행정기관간의 바람직한 직접 협조 인식.	○ 권한있는 연방 행정기관
○ 국제적 비조약 합의기구에서 고려할 미국입장의 개발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전략지점으로 인식	○ 연방 행정기관 COPANT, 비조약기구 ANSI 활동
○ 개방성, 형평성(balance of interest), 적정절차와 합의에 의한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를 개발·출판할 SDO 승인	○ NIST는 가 SDO를 이
○ 제안된 표준을 ANSI로 승인하고, Good Practice의 WTO 규정상 의무 준수	○ NIST는 임 민간부문간 전자적 교류
○ 관리시스템등록자(Management Systems Registrars)와 제품인증기구(Product Certification Organization) 승인	○ 본 MoU에 의한 장/단 전략에 따

진정책을 규정한 것이 제251조의 상호접속규정(interconnection)이다. 제251조는 지역통신시장의 경쟁촉진정책을 명기하고, 경쟁촉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일반적 의무로서 상호 접속(interconnection)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56조는 FCC의 기능으로 제251조의 상호접속성을 위한 감독 및 개발에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통신사업자간의 행위에 대한 규제라 할 수 있다.[5][6]

그런데, 그동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주로 FCC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번 통신법의 개정으로 미연방의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기통신법 제251조(상호접속)
 - (a) 전기통신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 각 전기통신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 (1) 기타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호접속해야 한다;
 - (2) …… 제256조(상호접속의 통합)의 목적을 위하여 수립된 가이드 및 표준에 따르지 않는 망 특성, 기능 또는 성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전기통신법 제256조(상호접속의 통합)
 - (a) 목적
 - (1) 전기통신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사용되는 통신망의 광범위한 사용자와 판매자에 의한 비차별적인 접근을 촉진할 것;
 - (2) 사용자 및 정보제공자가 전기통신망간 안전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것
 - (b) FCC의 기능
 - (1)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

중 통신망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접속을 위하여 통신사업자와 기타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통합된 통신망 계획을 FCC가 감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 (2) ---공중통신망 상호접속성을 수립하는 적절한 산업표준제정기구가 수행하는 개발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의 실행과 관련하여, FCC는 'NRIC'(Network Reliability and Interoperability Council)에 자문을 구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보고서는 FCC가 ANSI 등 표준화단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 통합네트워크계획을 감독하기 위하여, FCC는 ANSI의 승인을 받거나 기타 개방되고 합의에 의한 전기통신표준 개발기구(NRIC는 ANSI 승인기구 또는 국제기구로 ITU-T, Committee T1, TIA, IEEE, IISP를, 기타 개발기구로 ATM Forum, IETF, NMF 등을 거명)들이 국내의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지원하도록 모니터링한다.
- 신규 망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Committee T1이나 TIA 등 기존의 전기통신 표준개발절차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IV. 맺음말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표준화 활동은 민간의 자율성이란 측면에서 ANSI가 국내 및 국제비조약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호운용성 등 국가통신망의 안정을 목적으로 국무성과 FCC가 관련 국내·국제 표준화활동을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특히 ANSI는 실질적인 표준개발자(SDOs)를 승인하고 이들이 ANSI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표준개발과정에 있어서 일관성(consistency)과 통일성(coherence)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양한 민간부문이 ANSI에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ANS를 이용하도록 하여 국가 및 국제표준화단체에 있어서 ANS 및 ANSI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7][8]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표준화 활동은 주로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표준의 사용에 대하여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런데, WTO TBT 협정의 체결과 EU와 같은 지역적 블록화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은 이전까지 자신들이 누리던 경제적 우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표준화활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1996년 두 개의 일련의 법개정을 보면, 먼저 전기통신법의 개정은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율하는 것이고, NTTAA는 정부부문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기통신법 제251조는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표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256조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인 FCC의 기능의 하나로 전기통신망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통신사업자 또는 기타 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통합 통신망을 감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승인된 표준개발단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의 개발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NTTAA 제12조는 NIST법을 개정하고, NIST에 미행정기구 및 민간기구의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NTTAA 제12조(d)는 연방정부의 개별표준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임의표준에의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특히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표준을 연방기관에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법제도를 살펴보면, 1996년 양법의 개정은 민간 및 정부부문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준다. 즉 완전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면서도 장비간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의무지우고 있고, 정부가 사용하고 조달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민간 임의 표준화단체에서 제정된 표준의 사용 및 이에의 적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식표준화단체에서 제정된 표준 뿐만 아니라, 임의표준화단체에서 제정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FCC나 NIST를 통한 간접적 통제 및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상무성 산하의 NIST에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나, 한편에서 독립규제기관인 FCC가 또한 이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NIST의 위임·위탁에 따라 ANSI가 ANS를 승인하지만, ANS안은 분야별 ANSI 승인 표준화기구들이 개발·제안하는 등 주도적 표준화 활동 분야가 분산·조정되고 있는 체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손홍·강부미·박기식, "주요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절차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4권 제6호, pp. 134-149, 1999.12.
- [2] 손찬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표준화소식, pp.6-11, 1998.10.
- [3] NRC report,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st Century", NRC, 1995.
- [4] Lawrence Wills/John Godfrey, "An introduction to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ACM standardview, Vol.5 No.3, pp.97-98, 1997.9.
- [5] 清家秀哉, "アメリカの1996年電気通信法の概要", JURIST 増刊「變革期のメディア」, pp. 59-65, 1997.6.
- [6] 淺井澄子, "アメリカの1996年電気通信法と

通信”, ジュリスト増刊「變革期のメディア」, pp. 66-69, 1997.6.

[7] Gary S. Robinson, "ANSI's role in standards development", IEEE Micro, pp.84-85, 1997.11/12.

[8] Sergio Mazza, "The Future for ANSI", ACM StandardView Vol.3, No.4, pp.140-142, 1995.12.